

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578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5789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 15 선고 2020가단9296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인경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2. 8. 18.

판결 선고 2022. 10. 2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 15. 선고 2020가단929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0. 10. 23. 접수 제1123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부당이득 선행 사건 가) 원고는 시흥시 D 공장용지 2,405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536.08분의 530.71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C에 대하여 2010. 2. 22.부터 2016. 9. 26.까지의 지료 또는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425,313,722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6078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514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는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20. 8. 2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19,249,07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19나14260호).

2) 원고와 C 사이의 지료 청구 소송 가) 한편 원고는 C에 대하여 ① 2010. 2. 22.부터 2016. 9. 26.까지 기간의 지료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6. 9. 2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할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①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료 중 잔존금액이 221,693,262원임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고, ② 청구는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42호).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①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고, ② 부분은 파기환송하였다.

나) 이에 파기환송심은 ② 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보면서 '제1심 판결 중 2016. 9. 27. 이후의 지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88,711,000원(2016. 9. 27.부터 2018. 11. 17.까지의 지료)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과 2018. 11. 1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784,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05738호), 위 판결은 2020. 11. 27. 확정되었다.

3) 소송비용액 및 집행비용 원고는 앞서 본 1) 부당이득 선행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집행비용으로 4,426,190원을 지출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 또한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판결과 관련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233,342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합20357), 위 결정이 2019. 1. 2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C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0. 10. 23. 접수 제1123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설정 당시인 2020. 10. 23. 원고가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219,249,077	수원고등법원 2019나14260사건에서 강제집행이 불허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2	47,648,866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42사건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채권(= 잔존 지료 221,693,262원에 대한 2019. 1. 15.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의, 2019. 7. 20.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설정일인 2020. 10. 23.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	219,249,077	수원고등법원 2019나14260사건에서 강제집행이 불허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3	562,035,370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5738 사건에서 인정된 288,711,000원(2016. 9. 2.부터 2018. 11. 17.까지의 지료) + 2018. 11. 18.부터 2020. 10. 23.까지 월 11,784,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 273,324,370원[= 11,784,500원 × (23개월 + 6/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10,233,34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5	4,421,690	강제경매 집행비용
6	-105,000,00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I이 공탁하여 원고가 2020. 8. 27. 수령한 금액
7	-228,651,386	C가 2018. 11. 13. 2018년 금 제3926로 공탁하여 원고가 수령한 228,651,386원
합계	509,936,959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2) C의 채무초과 상태 가) 다툼 없는 사실, J은행, K은행, L은행, M은행, N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은행 예금채권	145,606
2	K은행 예금채권	829,774
3	L은행 예금채권	2,823
4	M은행 예금채권	64,615
5	N은행 예금채권	86,838
6	N은행 예금채권	52,195
7	이 사건 건물	430,000,0001)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4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의 2018. 11. 20. 최저매각가가 441,777,610원으로 확인되며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위 금액으로 인정한다.

1	J은행 예금채권	145,606
8	사천시 ○ 지상 건물 중 C 지분	322,088
9	사천시 P 대 40m ² 중 C 지분	161,000
10	사천시 ○ 대 1,021m ² 중 C 지분	4,909,308
합계	436,574,2472)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표에 기재된 부동산 외에도 ① 시흥시 S외 1필지 지상 건물, ② 사천시 T 전 261㎡ 중 1/6 지분이 C의 소유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①은 2015. 11. 4.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에 대하여는 2012. 11. 7.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이를 이유로 원고가 적극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았는데, 피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적극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만 보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509,936,959원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의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는 이로 인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던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2020. 10. 26. 공탁한 219,249,077원,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제3채무자 Q이 2015. 7. 6. 공탁한 79,012,240원, 제3채무자 R가 2015. 7. 6. 공탁한 34,800,000원을 각 원고가 수령하였고, 위 금원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4억 3,000만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채권을 모두 변제하고도 남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Q, R가 공탁한 금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기초사실에서 본 수원고등법원 2019나1426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하여 위 금원 등을 반영하고 남은 금액인 219,249,07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한 것이므로 위 금액을 재차 원고의 채권에 변제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2020. 10. 26. 공탁한 금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무자력 판단에 이를 반영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C가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C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고는, C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축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C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영호

판사이경선

판사김리사

별지

1)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4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의 2018. 11. 20. 최저매각가가 441,777,610원으로 확인되며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위 금액으로 인정한다.

2)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표에 기재된 부동산 외에도 ① 시흥시 S외 1필지 지상 건물, ② 사천시 T 전 261㎡ 중 1/6 지분이 C의 소유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①은 2015. 11. 4.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에 대하여는 2012. 11. 7.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이를 이유로 원고가 적극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았는데, 피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적극재산으로 보지 않는다.